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50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0.

발 의 자 : 민형배 · 문정복 · 김우영

이개호 · 안도걸 · 주철현

정준호 · 박지원 · 김문수

최혁진 · 이성윤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 제도의 운영 합리화를 위해, 첫째,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도 본회의 진행 권한을 부여하고, 둘째, 무제한토론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.

현행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한 요구서가 제출되면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며, 토론진행 중 의사정족수가 미달이어도 회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.

제22대 국회 개원 이후, 1년 3개월 동안 무제한토론은 총 6차례, 16개 법안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. 현재 본회의 의사진행 권한은 국회의장에게만 부여되고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구조로, 예외 규정이 없어 의장과 부의장이 교대로 진행을 맡는 상황입니다. 이로 인해 반복적 무제한토론 시 의장단의 업무 과중이 우려됩니다. 동시에 다수 의

원의 불참·이석으로 토론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이에, 무제한토론 시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에게도 진행 권한을 부여하고,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정족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 무제한토론의 본래 취지를 보장하면서 본회의 의사절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(안 제106조의2제1항 및 제4항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의2제1항 후단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“계속한다”를 “계속하되,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6조의2(무제한토론의 실시 등)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(이하 이 조에서 “무제한토론”이라 한다)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.	제106조의2(무제한토론의 실시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하며,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.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계속하되, 교

⑤ ~ ⑩ (생략)	<u>법인체 대표의원이 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.</u> ⑤ ~ ⑩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	---